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87

발의연월일 : 2025. 4. 14.

발 의 자: 박상웅・김도읍・김민전

박준태 • 박정하 • 박덕흠

김 건 · 이인선 · 유용원

정연욱 · 강승규 · 김미애

이철규 · 임종득 의원

(14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.

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79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100분의 50"을 "100분의 50(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00분의 50"을 "100분의 50(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25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9조의
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 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9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제79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) ① 「해외 복귀에 대한 감면) ① -----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| 제7조제3항에 따 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(이하 "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 호에 따른 업종(「통계법」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 ---100분의 50(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2월 31일까지 경감하고,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 00분의 75를 경감한다.

1.	$\sim$	3.	(생	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,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
<u>100분의 50(「인구</u>
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
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있
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
<u>25)</u>
③ (현행과 같음)